

창간호 (제1권 제1호) 계간  
**1997 가을**

21세기 정책개발을 위한

**NDI21**



**창간특집**

북한사회의 새로운 인식을 위한

■ 특별기고

공공정책과 열린 사회

■ NDI 진단

21세기형 리더십을 위한

■ NDI 전망대

한국의 미래와 연구

사단법인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제1권 제1호 1997 가을

## 목 차

창간사/21세기를 선도하는 NDI21	박관용/10
NDI25시	6
NDI21에 바란다	
대화와 토론의 열린 마당이 되길	김수한/12
미래를 개척하는 지혜의 원천이 되길	고 건/13
한·미 협력의 새로운 모델	마이클 D. 반즈/14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가교가 되어 주길	미하일 티타렌코/15
시론/未來今來	정문화/19
특별기고/공공정책과 열린 대화	데이비드 I. 스타인버그/20
창간특집/북한 사회의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	
올바른 북한관과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김석우/24
북한의 시발, 개편과 수정, 종말과 변화	김창순/30
이중적인 대북 인식의 극복을 위하여	신정현/33
식량지원 논의와 한반도 안보	이서항/36
진퇴양난 속 북한의 대외관계	유세희/38
통일논의의 혼란, 무엇이 문제인가	김도태/41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스콧 스나이더/44
수령제와 체제 붕괴의 위기	스즈키 마사유키/48
북한 체제를 보는 러시아의 시각	바실리 미헤프/50
북한의 변화와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	최완규/53
NDI전망대/한국의 미래학 연구동향과 과제	하인호/66
NDI진단/21세기형 리더십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새로운 정치와 리더십 - 정치	서진영/72
자생적 질서를 존중하는 정원사 - 경제	좌승희/78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의 행정 마인드 - 행정	이균범/82
청정한 미래 예감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 과학기술	신재인/85
21세기 한국의 외교전략 - 외교안보	김우상/88

21세기는 인류에게 두려움과 희망을 함께 갖게 한다.  
 기존의 인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변화는  
 오랜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인간이 주도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민족적 예지와 힘을 모아야 한다.



### NDI논단

무한경쟁 시대의 기술 경영 혁신 .....	김시중/91
WTO시대의 농정과 농촌, 어떻게 할 것인가 .....	허신행/95
새로운 정치를 위한 여성의 정치참여 .....	김정숙/107
OECD 가입과 한국의 조세 정책 .....	로레인 에덴/110
풍경이 있는 시/출발을 위한 날개 .....	황금찬/104
한국의 미/위계질서와 신분의 표상 관복 .....	조호순/100
<b>경험과 제언</b>	
뜨거운 민주주의의 현장에서 .....	송정숙/116
왜 문화외교가 필요한가 .....	김정원/120
지역감정 선동과 사실 왜곡 사례 .....	염홍철/123
북한 이탈주민과의 하나 되기 .....	강성모/127
끊임없는 첨단 기술개발을 통한 초경쟁시대의 생존 전략 .....	정강환/129
<b>조찬세미나 지상중계</b>	
탈냉전 시대 핵 비확산 정책과 통일문제 .....	신재인/132
제2기 클린턴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	마이클 D. 반즈·토머스 폴리/138
산업의 재구조화와 의식개혁 .....	김사철/141
한국 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	강경식/145
한반도 현안과 한·미 공조 .....	박관용/149
대북 연착륙정책과 미국의 선택 .....	헨리 키신저/152
<b>21세기로 달린다</b>	
정직과 신용으로 쌓아 올린 우방그룹 .....	158
환경 중심 철학을 지향하는 (주)피존 .....	161
20년 외길기업 크로바프라스틱(주) .....	164
식품산업 선도하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 .....	167
협력연구기관 소개 / 미국 국가정책연구원(CNP) .....	170
연구원 소개 .....	102
NDI사람들 .....	172
행사안내 .....	176

# OECD 가입과 한국의 조세 정책\*

로레인 에덴 · Texas A&M University

1996년 10월 11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한국은 이제 '발전된 시장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가 된 것이다. 회원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정책 조정과 비용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한국에서는 OECD 가입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논의가 국제 자본 이동의 자유화, 무역 외 거래 및 금융 서비스 등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그밖에도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조정을 거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추가로 한국은 매년 400만 달러의 경비를 납부해야 하고, 77그룹을 떠나야만 한다.<sup>1)</sup>

이 글의 주제는 한국의 OECD 가입이 국내외에 미치는 효과 중 하나에 대한 것이다. 한국은 OECD의 국제이전가격과세(international tax transfer pricing, TTP)레짐에 참여해야 한다. 이 국제 레짐은 공정한 조세징수를 위해 다국적 기업의 수입과 지출의 국제적 분배를 적절하게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레짐은 다국적 기업의 다양한 계열회사(지사)의 회사 내 거래가격, 즉 이전가격을 다루고 있다. 이 레짐의 주요 관심은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익을

옮기기 위해 과소 혹은 과다 청구 거래를 통해 이전가격을 조작하려 든다는 데 있다.

TTP 레짐의 목적은 첫째, 다국적 기업에 의한 세금 포탈을 방지하고 둘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며 셋째, 기업의 모국과 투자대상국 간에 세금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는 것이다. OECD는 회원국에 과세당국과 다국적 기업 양자 모두 제3자 기준(arm's length standard)에 따라서 이전가격을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거래의 주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에서 협상했을 만한 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sup>

OECD의 새로운 회원국인 한국의 다국적 기업은 OECD 이전가격과세레짐의 규범 및 규칙과 절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는 상당한 해외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전가격 규제로 외국과의 분쟁에 직면하게 될 재벌에 특히 중요하다. 또 한국 국세청은 OECD 기구에 참여할 권리를 보유할 것이며, 이 레짐의 규칙과 절차를 고안하고 집행하는 것을 도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재벌은 그들이 가입하고 있는 이

\* 로레인 에덴(Lorraine Eden)은 마운트 앨리슨대학교와 맥길대학교를 졸업하고 칼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Texas A&M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부교수이며, 동 대학 국제 경영 연구센터 연구부장이다.

\*\* 1996년 10월 24일 서울에서 열린 전경련 세미나에서 여기에 실린 글보다 다소 긴 원문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을 위해 조운을 아끼지 않은 김영민과 재수정을 위해 한국경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준 NDI와 김입삼에게 감사드린다.



**TTP 레짐의 목적은 첫째, 다국적 기업에 의한 세금 포탈을 방지하고 둘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며 셋째, 기업의 모국과 투자대상국 간에 세금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는 것이다.**

전가격과세레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OECD의 이전가격과세레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이 레짐의 회원인 한국 정부와 전경련을 위해 이 레짐의 몇 가지 함의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즉 현행 한국의 국제과세정책과 이것이 OECD의 정책과 어떻게 조화되는지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여기에 더하여 다자간 포럼에 한국이 참여하는 데 대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 OECD 이전가격과세레짐

1956년부터 OECD는 국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게임의 규칙'을 정립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 규칙은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한 OECD 회원국의 과세를 통제하게 된다. 이 게임의 규칙은 두 가지 근본적인 쟁점을 다루어야 한다.

- 관할권 쟁점 - 어느 나라가 어떤 거래에 대해 과세권을 가지는가?
- 분배 쟁점 -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의 수입과 지출이 국가간에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

국제 과세에서 관할권 쟁점을 국제적으로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해 OECD가 채택한 최초의 방법은 모델 조세 협약(Model Tax Convention)이다. 이 협약의 목적은 "국제적인 이중 과세를 회피하고 과세당국이 탈세와 조세 무효 주장에 대응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이 두 목적은 회원국이 OECD의 과세 협약을 모델로 사용하여 양자간

과세조약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두번째 방법은 OECD의 이전가격지침이다. 이는 다국적 기업 내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과 공제를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전가격이 제3자 가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듯이 다국적 기업의 수입과 지출은 제3자 기준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한다.

국제과세영역에서 OECD의 규제체계는 정책과 모델 협약들을 나열해 놓은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마디로 OECD는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국제 레짐을 형성한 것이다. 국제레짐은 관리 구조이다. 이것은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국제적인 거래비용을 줄이고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을 관리하는 방식이다.<sup>3)</sup> 레짐은 국제정치경제영역의 특정한 쟁점영역에서 각국 정부들 간의 일련의 기능적, 행위적 관계로 볼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레짐에 내재하는 원칙들, 레짐과 관련된 기대되는 행위유형 그리고 레짐을 형성하는 이해와 국제적 합의를 실행하는 공식적 장치들을 구현하고 있다. 레짐의 예로는 국제통화(국제통화기구(IMF)와 국제결제은행(BIS)을 중심으로 한), 안보(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기초한), 국제무역(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에 관련한) 레짐들이 있다. OECD 이전가격과세레짐은 국경을 넘어서는 다국적기업의 과세가능한 활동들을 더 잘 규제하기 위한 과세 당국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원칙과 규범과 규칙과 절차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과세와 탈세를 방지하고 국가들 간의 과세 대상(tax base)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이 레짐의 목적은 이전 가격규제에 관한 국제 조세 체계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서 성취 될 수 있을 것이다. OECD TTP레짐의 범위는 쟁점 영역과 지리적 영역에서 모두 넓은 편이다. 쟁점 영역은 다국적 기업의 전세계적 수입과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다국적 기업의 모든 활동에 대한 가치 평가를 포함한다. 레짐의 범위에는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 그리고 서비스의 가치평가가 모두 포함된다. 지리적 측면에서 모든 OECD 회원국은 레짐의 회원이며, 모든 회원국은 개별 회원국의 조세당국 대표로 구성된 OECD 재무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 CFA)에 참여함으로써 이 레짐을 지원할 것이 기대된다.<sup>4)</sup>

회원국들이 이전가격에 관한 OECD의 1차 보고서를 다양한 방법과 정도로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sup>5)</sup> 모든 OECD 회원국은 1차 보고서를 채택했다.<sup>6)</sup> 회원국들은 제3자 기준을 고수했으며, 미국의 이전가격 규제 혹은 OECD의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규제를 발전시켜 왔다. 재무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회원국은 1995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서명했다.<sup>7)</sup>

역사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세금이나 외환규제와 같은 규제 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이전가격을 활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OECD 밖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다. 1994년에 OECD는 동아시아 국가와 구소련에서 새로 갈라져 나온 국가가 OECD 기준에 기초해 이전가격지침을 채택하는 것을 돕기 위해 대화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레짐의 지리적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가격과세레짐의 규칙은 제3자 기준을 실제

로 적용하는 데 관련되어 있다. 1995년 OECD 지침은 제3자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CUP), 재판매 가격(resale price), 협정이윤 포함 생산비(cost plus), 이윤분할법(profit split method), 거래순이익 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을 제안하고 있다. 조세 당국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CUP 방법이다. CUP 방법은 문제가 제기된 거래와 비교 가능한 상품을 찾는 것이다. 이 비교 가능한 상품이란 다국적 기업이 서로 특수한 관계가 없는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사거나 파는 동일한 상품이다.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이 다국적 기업과 특수한 관계가 없는 상대방과의 거래이거나 서로 관계없는 상대방간에 거래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비교 가능한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사용된다.

절차의 차원에서 보면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개별국가의 조세 당국을 넘어서는 공통 표준을 구성하도록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국내 수준에서 감사 및 항의 절차와 선가격합의(advance pricing agreements, APA)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와 벌금 부과를 포괄하고 있다. 또 OECD 보고서는 관련된 상대방간에 수입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하는 데 기능 분석(functional analysis)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기능 분석은 관련된 상대방이 초래하는 행위, 위험, 자산, 비용에 대한 경제적 평가다.

국내 수준에서 주목할 만한 절차는 APA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 분쟁 해결 절차는 통상적인 조세 감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납세자와 과세 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이전가격 산정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APA의 목적은 국제 거래

에서 과세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APA는 통상적으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협상중인 상황과 해당 사실을 명시하는 납세자와 과세 당국 간에 작성된 합의문, 둘째 수용할 수 있는 이전가격 방법 개발, 셋째 결과의 제3자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의 적용을 말한다. 기업의 이전가격이 APA의 수명 3년을 초과하면 결과가 제3자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 APA 절차는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나 지금은 많은 OECD 국가에 확산되었다. 양자간 APA(BAPA)는 정부와 다국적 기업이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BAPA의 장점을 인식하면서 단일한 APA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필자는 APA 절차가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 수준의 절차는 양자간 과세조약을 포함하고 있다. 이 양자간 과세조약은 관할권간의 이전가격 분쟁을 해결하고, 이전가격 분쟁에 대해 가능한 국제적 중재를 실시하며(예를 들어 유럽연합에 의해 발전된 것과 같이), 과세 당국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호 동의 절차를 말한다. 양자간 과세조약은 이러한 국제적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요약하면 OECD 이전가격과세레짐은 1950년대에 OECD가 모델 조세 협약을 처음 개발했을 때 출발하였다. 그동안 특정한 규칙과 절차에 대해서는 회원국간에 견해 차이가 있었으나(예를 들어 무형 자산의 이전가격 조정 기간에 대한 것, 이전가격의 부적절한 평가에 대한 부정확한 벌금 부과, 미국에서 비교 가능한 이윤 방법의 사용), 이전가격 부분에서 OECD안에 국제레짐이 존재하는 것이 명확하다. 그렇다면 이 레짐에 가입하는 것이 한국에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국제 거래에 대한 한국의 조세 관리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 한국도 국내 기업의 전세계적인 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는 해외지사가 한국 본사에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송금할 때 제공된다. 한국에 설립된 해외 기업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입도 과세대상이다. 원천징수는 이자 유출과 배당금, 과세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 대한 특허 사용료에 25% 부과된다. 이 세율은 조약 상대국에는 10~15%로 줄어든다.<sup>8)</sup>

이미 한국은 47개국과 과세 조약을 체결했다. 비록 오래전 일이지만 아이슬란드와 포르투갈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와 과세 조약을 맺었다. 가장 최근의 조약은 1970년대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과 체결한 것이다.<sup>9)</sup>

한국은 1988년에 법인 소득세에 대해 이전가격 규제를 채택하였다. 한 법인이 국내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회사 내 거래를 하고 그 거래가 과세 당국이 보기에 법인 소득세 부담액을 비정상적으로 감소시켰을 때 과세 당국은 법인의 과세 가능한 소득을 재평가할 수 있다.<sup>10)</sup> 여기에 사용되는 기준은 제3자 원칙이다. 제3자 원칙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UP, 재판매 가격, 협정이윤 포함 생산비라는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정부는 해당 회사에 국제적인 회사 내 거래에 대해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한국의 OECD 가입과 조세 합의

국제적인 과세와 이전가격에 관한 측면에서 한국의 OECD 가입에는 몇 가지 명백한 합의가 있는데 이것은 현행 한국의 이전가격 관리 및 국제적인 과세와 TTP레짐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발언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만 한다는 말이 있다. 한국의 OECD 가입이 논의중일 때 한국은 재무위원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해 왔다. 이제 한국은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고, 재무위원회에 국세청을 공식 회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이제까지 OECD는 합의에 의해 움직여 왔기 때문에 한국이 이 위원회에 가입하면 한국은 정회원으로서 OECD 모델 소득세 협약, 이전가격 지침, 국제적인 탈세 등과 같은 쟁점에 대한 검토에 참여하게 된다. 이 위원회의 발언권은 힘을 가질 것이므로 국제 조세 영역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고려될 것이다.

한국이 거대하게 성장하는 다수의 다국적 기업의 모국인 이상 다자간 포럼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장기적 경쟁력에 중요하다. 한국의 발언권은 국제 조세 협의에서, 즉 재무위원회 수준과 기업 수준, 즉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모두에서 국제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BIAC는 OECD 국가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BIAC는 OECD에 다국적 기업의 과세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전경련의 회원사인 재벌도 BIAC 회원이 될 수 있으므로 발언권을 가지고 BIAC 내에서 정책 입안에 참여하고 OECD 재무위원회에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재벌에 OECD 수준에서 정책을 형성하는 데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OECD는 국제적인 규칙과 절차를 개발하는 데 더 효과적인 다자간 접근의 장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규칙을 위반하는 '변절자' 정부를 규제하고, 레짐의 틀 안으로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며, 제3자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어려운 영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 이것은 한국과 같이 중소 규모의 국가에 특히 중요한 일이다. 한 회원국이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이전가격과세레짐의 규범과 원칙을 파괴하면서 독자적으로 움직일 때 OECD 회원국이 한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레짐을 강화하고 작은 회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의 도구로서 매우 중요하다.

OECD에 가입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482조 규제에 근거하는 1995년 OECD 이전가격 지침 수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침은 매우 복잡하여, 단순히 제3자 원칙을 따르는 것과 이전가격을 규제하는 세 가지 수단(CUP, 협정이윤 포함 생산비, 재판매 가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 자료 제출 의무 : 재벌은 관련된 상대방과의 모든 국제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 현재의 문서화(contemporaneous documentation) : 재벌은 이전가격 산정방법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하고 그것을 한국 국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의해 제출해야만 하는가?
- 수시 조정(periodic adjustment) : 국세청이 한국에 신고된 수입이 불충분하다고 믿으면 무형 자산에 대한 이전가격이 한국 정부에 의해 재평가되어야 하는가?
- 부정확한 처벌(inaccuracy penalties) : 정부가 제3자 범위 밖에 있는 이전가격에 대해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가?
- 새로운 이전가격 산정방법(new transfer pricing methodologies) : 정부는 수용 가능한 제3자 방법의 범위를 이윤분할과 거래순이익 방법(미국에서는 comparable profits

method로 알려짐)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야 하는가?

· APA : 한국은 단일 APA와 다자 APA를 도입해야 하는가?

더욱이 한국은 OECD 회원국과의 양자간 과세 조약의 네트워크 특히 1970년대에 체결된 조약을 갱신해야 한다. 이것은 국제청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일과 한국의 양자간 과세 조약의 네트워크를 갱신하고 확장하는 일 그리고 당국의 활동 능력을 확장하는 일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4년에 멕시코가 OECD에 가입한 이후 이와 유사한 규제 활동의 확대가 일어났다.

한국 정부가 채택해야 하는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한국 기업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양자간 과세조약의 갱신된 네트워크와 APA는 재벌을 외국의 자의적인 과세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저임금의 동남 아시아 국가와 OECD 회원국

의 크고 부유한 시장 모두에 한국의 다국적 기업에 계속해서 진출함에 따라 더 강력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보호가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가 이전가격 지침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이러한 규제의 선두에 서서 일본과 협력할 수 있다. 한국 국제청은 APEC에서 이전 가격을 규제하지 않고 있는 다른 국가들을 제3자 기준에 따르도록 이끄는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다. OECD 재무위원회는 이전가격 지침을 아시아 전역에 걸쳐 적용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가 경제 발전의 사다리를 따라 오르도록 한국의 경제정책이 모델을 제공한 것처럼, 한국은 OECD 이전가격과세체제를 아·태 지역에 확산시키는 데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NDI**

## 주

- 1) Business Korea, "Korea's economy to be leveled up with OECD entry", *Business Korea* 13(7) July, 1996. pp. 60~61; Korean Development Bank, *Korean Foreign Exchange and Capital Markets: Liberalization*, 1996. URL: [http://kol.co.kr/~kdbmst/focus/fx\\_lib.html](http://kol.co.kr/~kdbmst/focus/fx_lib.html); Wall Street Journal, *South Korea's OECD Entry Is Hitting Snags*, October 1995, 20. A:9B.
- 2) OECD, *Transfer Pricing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Report of the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 (Paris: OECD, 1979);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Paris: OECD, 1995).
- 3) Lorraine Eden, *Taxing Multinationals: Transfer Pricing and Corporate Income Taxation in North America*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7); Stephan Krasner(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 4) OECD, *Taxation and International Capital Flows* (Paris: OECD, 1990).
- 5) Jill Pagan and Scott Wilkie, *Transfer Pricing Strategy in a Global Economy* (Amsterdam: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Publications, 1993).
- 6) OECD, 1979. op. cit.
- 7) OECD, 1995. op. cit.
- 8) Price Waterhouse, *Corporate Taxes: A Worldwide Summary* (New York: Price Waterhouse, 1996).
- 9) Tax Analysts, *Worldwide Tax Treaty Index*, 1996/97 Ed. (Arlington: Tax Analysts, 1996). pp. 64~65.
- 10) Price Waterhouse, *Doing Business in Korea* (New York: Price Waterhouse, 1989).